

서울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20285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현정, 김현진, 박용우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박형일

변 론 종 결 2021. 6. 2.

판 결 선 고 2021. 6. 30.

제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3360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2.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7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0, 11행의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을 제5, 14,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3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카) I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측 M 상무에게 C에 대한 총 투자유치금액이 20억 원이고, 신규 사업을 계획 중이며,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더라도 다시 피고로부터 그 중 A동 창고 100평, B동 창고 500평을 임차하여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타) 피고가 2019. 4. 1. C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잔금 6,663,700,406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직전에 C의 채권자인 N에 의하여 가압류등기(채권액 1억 500만 원)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C에게 이를 항의하였으나 대표이사인 I의 출국 사실을 알고 곧바로 I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C의 1억 500만 원 상당의 가압류채무까지 예상치 못하게 떠안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고작 80,101,390원의 미수금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그 10배에 달하는 80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한 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지원, 판사 이예슬, 판사 이재찬